

사외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

한미약품(주)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사회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고, 제약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R&D경영과 이사회 중심의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자격과 윤리의식을 갖춘 이사와 사외이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. 이에 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과 글로벌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제약산업을 특성을 반영해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.

1. 관련 법률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
2.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없는 자
3.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자
4. 회사 또는 계열사(비영리법인 포함)의 최근 5년 이내에 임직원이 아닌 자
5. 회사, 최대주주, 계열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, 협력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개인 혹은 법인의 최근 5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 아닌 자
6. 회사의 외부감사, 그 계열 법인의 피고용인 및 관계자로서 감사 또는 관계 업무를 수행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7. 그 밖에 법률,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최근 3년 이내에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자

2024. 2

한미약품 주식회사